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이필용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충청북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규정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2조)
- 다. 채택여부의 결정 (안 제18조)
- 라. 창안의 등급 (안 제21조)
- 마. 창안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 (안 제22조)
- 바. 인사상 특전 (안 제24조)
- 사. 창안의 사후관리 (안 제27조부터 제30조)

## 4. 검토의견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 왔음.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경우에는 도민들이 직접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었음.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안제도는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방안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또한, 제안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